



## 대학혁신위원회 규정

제정일	2022. 4. 1
개정일	
개정차수	차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자체투입재원과 재정지원사업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대학 내 사업총괄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대학혁신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총장 및 각 행정처·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교직원 등을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자원 투입 방향 설정
2.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유기적 관리·운영
3. 대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회계 모니터링
4. 대학의 자율혁신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 5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결사항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6조 (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